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87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최실적이 저조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외입양인 용어 정의 변경

- 국내입양기관을 통하여 → 관할구역 내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나. 비상설 위원회 규정 신설

-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 한 것으로 본다.

다. 위원 임기 수정

- 2년 →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

라.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제1항제1호 삭제

-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 마.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 바. 위원회 구성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사. 별지 제1호 서식 : 성별구분 표기란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있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별지 제1호 서식(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 성별구분 표기란 신설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법무팀 의견】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법무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써,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저조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바가 없음.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같은 목 및 다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를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 입양인”이란 관할구역 내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4.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

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명예구민증”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으로, “현저하고”를 “있고”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중 “공공단체의장”을 “공공단체의 장”으로, “10인”을 “10명”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위원회”로,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2인”을 각각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별표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2”를 “별표 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을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각호의 1에 의한”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구민의 날 및 구”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를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가”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p>제2조(용어의 정의) -----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나.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 사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사람 다. ----- 사람 라. -----

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
여한 자

2. "외빈"이라 함은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해외입양자"라 함은 국내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자를 말한다
4.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① 명예구민증은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사람

2. -----이란 -----

----- 사람을 말한다.

3. "해외 입양인"이란 관할구역

내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4. "공공단체의 장"이란 -----

-----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있고 -----
----- 사람-----.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 의장, 구의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 연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 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 의장----- 10명 -----
----- 10명 -----

----- 따라 -----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①-- 어느 하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1. ----- 사람-----

2. ----- 사람-----

②-----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3인
2. 구의원 2인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생략)

제9조(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회의록) ① (생략)

1. ·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

1. ----- 3명

2. ---- 2명

3. ----- 2명

③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여방법 등) 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표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2의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수여방법 등) ① 제11조에 따라 ----- 사람에게----- 별표 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 2-----.

②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

④ 제1항에 따라 -----.

⑤ 제4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p>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 구민증을 수여 받은 <u>자에 대하여</u> 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 도록 다음 <u>각호의 1에 의한</u> 예우 를 할 수 있다.</p>	<p>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 ----- <u>사람에게</u> ----- ----- -- <u>각 호의</u> ----- --. <u><삭 제></u></p>
<p>1. <u>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 여</u></p>	<p>1. <u>구</u>----- -----</p>
<p>2. <u>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u></p>	<p>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p>
<p>3. (생 략) 4. (생 략)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 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4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 장은 이 <u>조례의 규정에 의하여</u> 명 예구민증을 받은 <u>자가</u>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14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 ----- <u>조례에 따라</u> ----- ----- <u>사람이</u> ----- ----- ----- -----.</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명예구 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u>제1 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u> <u>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u> 취소된 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 ----- <u>제13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가</u> --- -----.</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p>	<p>제15조(수당) -----</p>

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 중 -----
----- 범위-----
-----.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구민증수여 대상자 추천서(제4조 관련)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직업·직위		
가족관계		사용언어		한국어 구사정도	상·중·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소속(주소)

전화 :

담당자 :

수신자 : ○○○○장 ○○○ ⑨

* 1. 구민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2.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부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배주연 (☎ 3153-8325)